



공지사항

공고 및 고시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318호

『외화여수산업무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한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자금 융자대상자 선정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6년 6월 13일
통상산업부장관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자금 융자대상자 선정요령

1. 융자대상자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자는 제2항의 융자대상품목을 국내생산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업자로 한다. 다만, 가정용으로 구입하는 경우와 대기업자가 생산하고 대기업자가 구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융자대상품목

가. 융자대상품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한다.

-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의 『자본재산업』에 속한 기계설비류

- (2) 통상산업부에서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중 기계설비류

나. 융자대상품목중 다음의 품목에 대해서는 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 (1) 자본재산업의 육성 및 수입대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에서 고시한 『기계류·소재 국산화대상품목』 및 『자본재산업 전략품목』 중 기계설비류
- (2) 자본재의 품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립기술품질원에서 고시한 『기계류·부품·소재의 품질인증요령』에 따라 우수품질마크(EM 마크)를 받은 기계설비류
- (3) 자본재의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통상산

업부에서 고시한 『자본재표준화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개발된 기계설비류 또는 표준규격부품이 채택된 기계설비류

(4) 자본재산업육성대책에 따른 『금형산업 경쟁력 확보방안』에 따라 통상산업부가 고시한 『중점육성 대상금형』

다. 용자대상품목은 가격기준으로 전체 재료비에서 국산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3. 용자대상품목 확인

가. 다음 각호의 확인기관은 국내생산자 또는 구매자로부터의 확인신청에 따라 당해품목이 『용자대상품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확인서를 발급한다.

- (1) 한국기계공업진흥회 : 전 품목
- (2)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 : 공작기계류 및 로봇
- (3) 한국섬유기계협회 : 섬유기계
- (4) 한국봉제기계공업협회 : 재봉기
- (5) 한국광학기기협회 : 광학기기
- (6)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 금형
- (7) 한국반도체산업협회 : 반도체장비
- (8) 한국전자산업진흥회 : 통신기기류, 계측기기류, 정보처리시스템
- (9) 한국전기공업진흥회 : 전기기계류

나. 확인기관은 용자대상품목에 대한 국산재료비 확인을 품목을 구성한 부분품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다. 이 자금을 용자받고자 하는 자는 “가”항에서 정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용자취급은행

에 용자를 신청하고, 용자취급은행은 동 『확인서』에 의하여 용자대상으로 취급한다.

4. 확인기관의 보고사항

가. 한국기계공업진흥회 이외의 확인기관은 용자대상품목 확인실적(업체명, 품목명, 대기업·중소기업 구분 등)을 한국기계공업진흥회에 매월 5일까지 통보한다.

나. 한국기계공업진흥회는 확인기관의 용자대상품목 확인실적을 종합하여 매월 10일까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기 타

본 요령에서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운용세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고시의 폐지)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5-64호(외화표시 국산기계구입자금 용자대상자 선정요령)는 이를 폐지한다.
- ③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5-64호에 의거 실수요자로 선정된 자는 종전고시에 의한다.